

공 동 주 택 과

연번	세 부 사 업 명	
1	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	
	1-1	구미시 정비사업 통합개발을 위한 시범생활권계획 수립 용역
	1-2	동지역 빈집 정비사업 시행
	1-3	공동주택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
	1-4	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운영
2	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	
	2-1	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
	2-2	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
	2-3	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
1

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

▷(필요성)

-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탈피하여 구미시만의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
-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주거문화 조성

▷(추진방향)

- 관리대상 빈집의 안전조치 및 행복주차장, 주민 텃밭, 주민 쉼터 조성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
- 구미시 고유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에 활용 하도록 유도하여 구미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 색채디자인 정책 실현
-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

□ 주요내용

1-1.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개발을 위한 시범생활권계획 수립 용역

- 위 치 : 신평동, 인동동 일원
- 용 역 비 : 113백만원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
- 주요내용 : 생활권 설정,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·보전·관리 방향, 기반시설 설치계획, 주택수급계획,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 기준설정
- 추진 계획
 - 입찰 공고(협상에 의한 계약) : '23. 10월
 - 착수보고회 개최 : '23. 12월
 - 관련부서 의견 수렴 : '24. 2월
 - 중간보고회 개최 : '24. 4월
 -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'24. 5월
 - 최종보고회 개최 : '24. 7월
 - 용역 완료 : '24. 8월

1-2.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 시행

- 근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
- 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
- 사업비 : 300백만원
 - 철거비용 : 100백만원(5호 × 20백만원)
 - 활용비용 : 150백만원(5호 × 30백만원)
 - 안전조치 : 50백만원(10호 × 5백만원)
- 사업대상 : 15호(3등급 10호, 4등급 5호)
 - 빈집 소유자 공익용도 사용 동의 가능 대상지
 - 빈집실태조사결과 418호 중 15호 시범 시행
- 사업내용
 - 3등급 빈집 : 안전조치(10호)
 - 4등급 빈집 : 철거(5호) 및 소유자 공익용도 사용 동의에 따라 행복주차장, 주민쉼터, 소공원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
→ 추후 활용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 검토
- 세부계획
 - 소유자 동의 조사 및 세부계획수립 : '23. 11.
 - 빈집정비사업 시행 : '24. 1. ~ 12.

1-3. 공동주택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

- 사업기간 : 용역완료 후 시행
- 사업대상 : 구미시 관내 사업승인대상 *공동주택 30세대 이상
- 사업내용
 - 구미시 공동주택 입면 색채디자인 다양성 확보 및 특화된 야간 경관을 개발하여 조성
 - 공동주택 건설사별 디자인은 인정하되 채도·명도의 기준을 정하여 구미시만의 특색을 적용
 - 구미시 고유 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유도
- 세부계획
 - 색채디자인 ·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용역완료 : '24. 2월
 - 사업승인 신청시 가이드 라인 적용 : '24. 3월 ~

1-4. 구미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운영

- 사업기간 : 2024년 연중
- 총사업비 : 13백만원
 - 공공 클라우드 임차 비용 : 12백만원
 - 홈페이지 유지·보수비용 : 1백만원
- 사업내용
 - 정비사업 추진현황 게시를 통한 시민 알권리 충족
 - 조합 행정업무 및 정보공개 지원으로 사업 추진 활성화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제·개정 안내
 -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추진현황 및 세부계획
 - 홈페이지 제작 운영 기본 계획 수립 : '22. 11.
 - 과업심의위원회 시행 : '23. 4. 13.
 - 보안성 검토 완료 : '23. 5. 12.
 - 홈페이지 개시 및 클라우드 계약 완료 : '23. 8. 17.
 -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: '24. 연중
 -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및 정보 현행화 : '24. 연중

담당부서 :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(☎2851) / 재개발재건축팀 (☎2881)

2

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

▷(필요성)

-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
- 노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

▷(추진방향)

- 구미시 및 전입예정 타지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- 타지역 신혼부부의 구미시 전입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
- 임차료, 수선유지사업,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및 주거안정 실현
-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

□ 주요내용

2-1.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

- 근거 : 「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- 대상 :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구미시 내에 주민등록된(1개월 이내 전입예정 포함) 무주택자
- 사업량 : 500세대 정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- 사업비 : 1,000백만원(도비 500, 시비 500)
- 사업내용
 - 전세보증금(융자한도 최대 2억원)에 대한 이자(최대 2.5%, 연 500만원/세대) 지원
 - 지원기간 최장 6년(기본 2년, 자녀 1명당 2년)

○추진실적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	이자지원현황		비고
		세대수	금액	
2023년	1,000	466	353	하반기 추진중
2022년	1,000	303	639	

○세부계획

- 지원신청 접수 및 이자지원 추천서 발급 : '24. 1월 ~
- 이자 지원금 협약은행 송금(반기별) : '24. 6월, 12월

2-2.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
○ 사업내용

[임차급여]

- 근 거 : 「주거급여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- 대 상 : 중위소득 47%이하
- 내 용 : 임차가구,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- 사업비 : 12,132백만원(국비 10,919, 도비 849, 시비 364)

[수선유지급여]

- 근 거 : 「주거급여법」, 「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」
- 내 용 : 자가가구,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 주택개량
- 사업비 : 769백만원(국비 692, 도비 54, 시비 23)

[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]

- 근 거 : 「주거기본법」, 「공공주택특별법」
- 대 상 : 여관, 반자하 등에서 공공·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17세대
- 내 용 : 주거이전 시 이주비 40만원 지원
- 사업비 : 6.8백만원(국비 3.4, 도비 3.4)

[전세금 융자 지원]

- 근 거 :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- 대 상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
- 내 용 : 세대당 6천만원 이하의 전세금 융자 지원(임주자부담금 이자1%, 보증금5%)
- 사업비 : 1,200백만원(시비)

○ 추진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임차급여		수선유지급여		전세금 융자지원		비 고
	세대	금액	세대수	금액	세대수	금액	
2023년	47,501	7,557	106	768	8	384	추진중
2022년	74,552	10,415	94	567	4	215	

○ 세부계획

- 계획수립 : '24. 1월
- 사업시행(수선유지급여 협약(LH)체결) : '24. 1 ~ 12월

2-3.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

- 근거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사업대상 :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
공동주택(사용검사 후 20년 이상)
- 사업량 : 25개 단지 내외
- 예산 : 400백만원(보조금비율 시비 70~80%, 자부담 20~30%)
- 사업내용 : 시설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
 -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, 석축·옹벽·담장 등의 보수
 - 상·하수도 관련 시설, 가스공급시설 보수, 수목 전지
 -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, 주민운동시설, 자전거 보관대 보수
 - 장애인 편의시설, CCTV, 차단기 보수·설치, 옥상방수 등
 -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지원

○ 추진실적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예산액	교부현황		집행현황		비 고
		단지수	금액	단지수	금액	
2023년	360	23	343	8	69	추진 중
2022년	400	29	382	26	347	

○ 세부계획

-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: '24. 1 ~ 2월
-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 : '24. 3 ~ 4월
- 지원 단지 확정 및 사업 착수 : '24. 4월
-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·정산 : '24. 4 ~ 11월

담당부서 :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(☎2851) / 공동주택관리팀(☎2861) / 주거복지팀(☎2871)